

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개정계획

의 안	6-81
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. 4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☐ 개정이유

-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물(시조, 시화)중 일부 생물종이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지역 이미지에 어울리는 생물종을 상징물(시화, 시조)로 지정하기 위함.

☐ 주요내용

- 시 상징물을 지역이미지에 부합하는 생물종으로 선정
 - 가. 시화(市化)를 장미에서 황매화로 변경
 - 나. 시조(市鳥)를 비둘기에서 파랑새로 변경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동두천시 상징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제3조제6호 중 “장미”를 “황매화”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“비둘기”를 “파랑새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실과		기획감사실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기획감사실장 홍 현 섭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기획담당 염 필 선
	담당자 성명·전화	한 영 수 860-2053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징물 종류)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상징마크 및 로고타입 2. 도시브랜드 3. 시기 4. 휘장 5. 캐릭터 : 다람쥐, 단풍요정 6. 시화(市花) : <u>장미</u> 7. 시목(市木) : 은행나무 8. 시조(市鳥) : <u>비둘기</u>	제3조(상징물 종류) (현행과 같음) 1.~5. (현행과 같음) 6. 시화(市花) : 황매화 7. (현행과 같음) 8. 시조(市鳥) : 파랑새